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단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보증 시 국회 동의 명시화〉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77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인선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6.
3. 회부연월일 : 2026.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의 해당 보증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보증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한국장학재단의 재단채 발생 시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 ④ (생략)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⑤ ----- ----- <u>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¹⁾는 재단은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동 조 제5항은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⑦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인데, 현행법 체계상 이러한 공공기관들은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채권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여 원리금 상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

<공공기관 채권의 원리금 상환 보증에 관한 입법례>

공공기관명	근거법률	근거조문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법」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3조(채권의 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채권의 발행)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법」	제27조(채권의 발행)

- 다만, 「국가재정법」 제92조²⁾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가 재단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보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2)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개정안은 재단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보증 시,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취지임.

- 「국가재정법」 제92조는 국회의 동의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 보증 시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

다만, 최근 타 공공기관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 등에서 국회의 동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국회 동의 절차의 명문화**를 통해 법률 간의 일관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공공기관 채권의 원리금 상환 보증 시 국회 동의 절차에 관한 입법례>

근거법률	근거조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9조(기금의 재원)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한국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제26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산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고자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